

"정령은 당연하게! 전북교육은 당당하게!"



전라북도교육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[교육]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배포 활용

1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2.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,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‘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’를 안내하오니, 학교에서는 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.4’가 원활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.
 - 가. 목적: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
 - 나. 방법: 초·중·고교 가정통신문(온라인 가정통신문 포함)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배포
※ 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란 또는 가정통신란 등에 탑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.

붙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Vol.4 1부. 끝.

전라북도교육감

수신자 교육지원청 교육장(14청), 공사국립초중고특수학교장(773교)

장학사

장학관

민주시민교육과
장

협조자

시행 민주시민교육과-2532 (2021. 2. 22.) 접수 만경여자중학교-728 (2021. 2. 24.)

우 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/ <http://www.jbe.go.kr/citizenship>

전화 239-3456 /전송 063-220-9413 /rich0019@jbedu.kr / 공개

"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+"